

#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

제정 2008. 12. 30.

개정 2009. 02. 26.

2009. 08. 28.

2009. 11. 04.

[2011. 09. 23.](#)

**제1조(약관의 적용)** 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2조(준수사항)** 고객과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국내의 제법령, 관련 규정,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준수한다.

**제3조(투자유의사항)**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
1.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해당 증권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.
2.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정보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보다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.
3.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종류가 다양하고, 국내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다.

**제4조(매매주문의 처리)** ① 고객의 회사에 대한 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[<별첨>에서 정하는](#) 바에 의한다.

②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문일과 매매성립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.

**제5조(외화예금계정의 개설)**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-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부기한 고객명의로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. 다만,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6조(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)**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5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**제7조(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)**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(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. 이하 “약정일”이라 한다)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다.

② 환전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회사명의로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.

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.

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.

**제8조(결제일)**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기산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. 다만, 신규 또는 추가설정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<별첨>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.

**제9조(매매대금)**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총당한다. 다만,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액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)**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로 외화예금계정에 입금. 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.

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야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이체한 후 비용에 총당할 수 있다.

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.

**제11조(판매수수료 등)**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<별첨>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<별첨>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12조(예치금 이용료)** ①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<별첨>에서 정하는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,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3조(매매결과 등의 통지)**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,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환전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1. 매매의 유형, 종목·품목, 수량·가격·수수료 등 모든 비용, 환율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

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
가. 서면 교부

나. 전화, 전신 또는 모사전송

다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

라.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

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예탁 및 보관)**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, 해당 국가의 제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·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

**제15조(권리행사)**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주주(수익자)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. 다만,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보관증의 교부 등)**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, 교부한다. 다만, 회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보유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관증을 발행,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)**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도달일 부터 5년간 비치, 보관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판매중지시의 조치)**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고객의 신고사항)** ① 고객은 회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성명, 주소,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통보의 효력)** 고객의 신고주소에 대한 회사부서의 제통보가 고객의 이사, 부재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

에 의해 연락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야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.

**제21조(약관의 변경 등)**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(20)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면책사항)**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1. 천재지변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(매매의 집행,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)의 지연 또는 불능
2. 고객의 귀책사유

**제23조(분쟁조정)**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**제24조(기타)**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‘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’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표준약관 등의 폐지)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표준약관인 외국간접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# <별첨>

1. 제 4 조제 1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은

- 매입청약 : 09:00~14:50
- 환매(전환)청약 : 09:00~15:00
- 신규매입청약은 내점 및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, 추가매입, 환매 및 전환청약의 경우 내점, 온라인 및 유선 거래 가능하다.

2. 제 8 조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날은 다음과 같다.

-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신규 또는 추가설정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관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.

3. 제 11 조제 1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제수수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-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시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제수수료 및 비용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운용사별로 상이하며 이는 각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상에 ‘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’ 및 붙임 자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.

4. 제 11 조제 2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납입시기는 다음과 같다.

-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고객이 매입청약을 하는 동시에 판매수수료 납입이 이루어진다.

5. 제 12 조제 1 항의 “<별첨>에서 정하는” 이용료 및 경과이자는 다음과 같다.

예탁금 이용료 요율은

“회사 홈페이지 [www.truefriend.com](http://www.truefriend.com) > 주식선물옵션 > 국내선물/옵션 > 수수료안내 > 예탁금이용료” 에 게시됩니다.

6. 기타 특약사항

해당사항 없음.